제3장 난민위원회

제29조(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난 제29조(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제 민정책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31조제1항 | 3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·의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 결하기 위하여 난민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인 이상의 위원 은 상임으로 한다.

제30조(난민위원의 임명 및 자격) ① 위원 은 난민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 험이 있고 난민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 해당하는 자(이하 "민간위원"이라 한다) 또 는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|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.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(이하 "정 부위원"이라 한다) 중 법무부장관의 제청으 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.

- 1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
- 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- 3.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있 통령이 임명한다. 었던 자
- 4. 그 밖에 위에 준하는 난민에 관한 지 식과 경험이 있는 자
- 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대 고, 연임할 수 있다. 통령이 임명한다.
- ③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
- ④ 정부위원의 수는 민간위원의 수를 넘 지 아니하도록 한다.
-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 고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3장 난민위원회

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 립하여 수행한다.
- ③ 위원회는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인 이상의 위원은 상임 으로 한다.

제30조(난민위원의 임명 및 자격) ① 위원 은 난민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 험이 있고 난민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 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

- 1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난민 관 련 소송을 최소 5년 이상 수행한 자
-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 또는 제3 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 또는 제3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 - 3. 그 밖에 위에 준하는 난민에 관한 지 식과 경험이 있는 자
 - 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대
 - ③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 다.
 -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

제31조(위원회의 업무) ① 위원회는 다음 제31조(위원회의 업무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·의결한다.

- 1. 난민의 인정 및 지원에 관한 주요정책
- 2. 난민인정이 불허된 자 및 난민인정이 취소된 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취소된 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- 도적지위인정이 취소된 자의 이의신청에 관 한 사항 한 사항
- 4. 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·협력에 관한 사항
- 5. 법무부장관이 난민업무에 관련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난민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
- 6. 그 밖에 난민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위원회 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며 그 외의 위원회 의 결정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, 질서유 지 또는 공공복리에 위해하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법무부장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다.

이상의 난민연구조사관을 두되, 난민연구조 이상의 난민연구조사관을 둔다. 사관은 법무부 소속으로 한다.

- ② 난민연구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.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.
 - 1. 위원회의 운영 보조
 - 2. 난민정책 등에 대한 연구
 - 3.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
 - 4.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

각 호의 사항의 심의·의결한다. 1. 난민인정이 불허된 자 및 난민인정이

- 2. 인도적지위의 인정이 불허된 자 및 인 3. 인도적지위의 인정이 불허된 자 및 인 모적지위인정이 취소된 자의 이의신청에 관
 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위원회 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며 그 외의 위원회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 결정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. 질서유 업무를 총괄한다.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│지 또는 공공복리에 위해하다고 판단하지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아니하는 한 법무부장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.

제32조(난민연구조사관) ① 위원회에 1인 제32조(난민연구조사관) ① 위원회에 5인

- ② 난민연구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
- 1. 위원회의 운영 보조
- 2.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
- 3.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

제33조(자문기구)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 | 제33조(자문기구)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

를 둘 수 있다.

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.
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5조(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·협력) ① 법 - 제35조 삭제-무부장관 및 위원회는 유엔난민기구가 난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정보 및 통계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 조하여야 한다.

- 1. 난민 등의 상황
- 2.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이행 상황
- 3. 난민 등에 관한 현행 법령과 행정규칙 및 장차 시행될 법령과 행정규칙
- 4. 난민인정 또는 이의절차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난민위원회에의 의견 제시
- ② 법무부장관 및 위원회는 유엔난민기구 의 요청이 있거나 난민신청자의 신청이 있 는 경우 유엔난민기구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- 1. 난민신청자와의 면담
- 2. 난민전담공무원, 난민담당공무원 또는 난민연구조사관의 면접과정에의 참여
 - 3. 난민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의 참여
- 4. 난민인정 또는 이의절차 관련 서류 검 토 및 법무부장관 또는 난민위원회에 의견 제시
- ③ 법무부장관 및 난민위원회는 유엔난민 기구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 공하여야 하고, 유엔난민기구와 협력하여 난민인정 및 이의절차에 관여하는 공무원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시행하여야 한다.

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 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 를 둘 수 있다.

②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 │ ②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4조(난민위원회의 운영) 난민위원회의 제34조(난민위원회의 운영) 난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│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유엔난민기구에 난민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위 기구의 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 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<수정 이유>

제29조

- 난민정책에 관한 조항 삭제
- 법무부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2항 추가

제 30조

- 난민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난민관련 지식과 경험 부분 추가
-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의 구분 삭제

제 31조

- 난민 정책 및 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·협력에 대한 부분 삭제

제 32조

- 난민연구조사관을 5인 이상으로 확대
- 난민정책에 대한 연구 기능 삭제

제 35조

- 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항은 별도의 조항으로 이동(제 1장 총칙 부분으로 이동하는 방안)